강 남 구

수신 내부결재
(경유)
제목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안(개발행위허가 제한 - 수서동 727번지)

수서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(수서동 727번지-임대주택 예정지)내 광장 조성을 위한 "개발행위허가 제한 심의(안)"에 대해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3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따라 구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코자 합니다.

□ 개발행위허가 제한 심의(안)

가. 대상지 : 강남구 수서동 727번지(면적 : 3,070.5㎡)

나. 제한사유

- 수서역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, 대모산 도시자연공원의 미관 및 경관 확보를 위해 지구단위계획(도시계획시설-광장) 결정(변경)을 통해 광장을 조성할 예정임.

다. 제한기간 : 개발행위허가제한 고시일로부터 3년간

라. 제한대상

(1)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

- 건축물의 건축, 공작물의 설치, 토지의 형질변경, 토석의 채취, 토지분할,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

(2) 건축법 제11조(건축허가) 및 제14조(건축신고)

마. 제한 예외대상

- 위 "라" 항에도 불구하고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필요성이 인정되는 행위

첨부 : 도시계획위원회 상정(안) 1부. 끝.

주무관 명노안 도시관리팀장 염태웅 도시계획과장 이수진 도시환경국장 배경섭

부구청장 05/31 주윤중

협조자

시행 도시계획과-12317 ( ) 접수 ( )

우 06090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426 / www.gangnam.go.kr
전화 02-3423-6112 /전송 02-3423-8843 / / 부분공개(5)